

※ 상속/유증 길러 문제 풀이 요령

①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 재산 확인

- 적극재산 소극재산 총합
- 유증이 있는 경우 유증액을 공제한 금액이 법정 상속재산
- 유증이 유효한지 여부(엄격한 요식성)를 판단 후에 유증이 유효한 경우에만 공제할 것

② 상속인 적격 파악

-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 자격 없음
 - ※ 사망신고와 무관하게 사망으로 권리능력 상실
-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 적격 없음
 - ※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 적격 없음
- 사실혼 관계에서의 출생자는 인지 절차가 있는 경우 상속인 자격 취득
- 이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인 지위 상실
 - ※ 지위 상실 시기 중요

협의이혼 : 관할 관청 이혼 신고	재판상 이혼 : 판결의 확정
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

- 이혼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청구만으로는 지위 상실 X
- 양자 친양자의 경우 상속인 적격 취득
 - ※ 양자의 경우 : 친생 부모에 대해서도 상속인 자격 유지
 - 친양자의 경우 : 친생 부모에 대한 상속인 자격 상실
- 유류분은 상속자격을 전제로 하여 행사할 수 있다.
(상속 자격이 없거나 상속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류분 없음)

③ 상속분 및 상속액 검토

-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분을 적용한다.
-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(3), 직계비속(2)로 계산하여 빠르게 상속분 대입할 것

예) 피상속인 남편 甲 사망시

상속인 배우자 乙 자녀 丙 丁 존재시

乙 3 丙丁 2 : 3/3, 5/2, 2/5